

1. 개정이유

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 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·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690호, 2023. 8. 16. 공포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, 타법개정 등 일부개정 과정에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행정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0조)
 -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,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조문 삭제
- 나. 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(안 제10조의2)
 - 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, 신청이 타당한 경우 시설물 설치 허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.

다.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용어개선(안 제16조, 제19조, 제24조, 별지 제18호서식)

1) 제명 변경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화*(안 제16조)

*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→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‘20.7.8.) 시행되어 “감정평가업자”로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변경(안 제19조)

3) 시행령 개정(‘09.9.21., 대통령령 제21743호)시 삭제된 조항(영 제27조 제4항) 인용 조문 수정(안 제24조)

4) 권리·의무 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(안 별지 제18호서식)

라. 무인도서 점검 사항 보완(안 제17조)

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 점검시 쓰레기 및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점검 사항을 구체화

마. 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 서식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개선(안 별지 서식)
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, 허가서, 준공보고서, 준공확인증명서 등 행정서식을 신설하고, 기존 서식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○○○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11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)”를 “(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시설물 설치 허가 등)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(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(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고, 관련 사항을 허가청의 누리집 및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- ④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.
- ⑤ 영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.
-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허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실을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6조의 제목 “(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)”를 “(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해기점무인도서”를 “영해기점무인도서 및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(이하 “영해기준점 표지”라 한다)가 설치된 도서”로, “영해기점표가”를 “영해기준점 표지가”로, “영해기점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”을 “훼손된”으로, “영해기점표를”을 “영해기준점 표지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영해기점표의”를 “영해기준점 표지의”로,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”를 “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”로 한다.
- 제17조제1항제2호 중 “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의 오염”을 “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훼손 및 오염(쓰레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개발사업”을 “시설물 설치 및 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- 제19조제1항 전단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- 제24조 전단 중 “영 제27조제4항”을 “영 제27조”로 한다.
-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- 별지 제4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

설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일련번호	처리기간	3개월			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			
	주소						
	전화번호						
도서명							
토지의 표시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권리의 종류	비고
	1						
	2						
	3						
관리유형 지정내용							
관리유형 변경사유							
변경내용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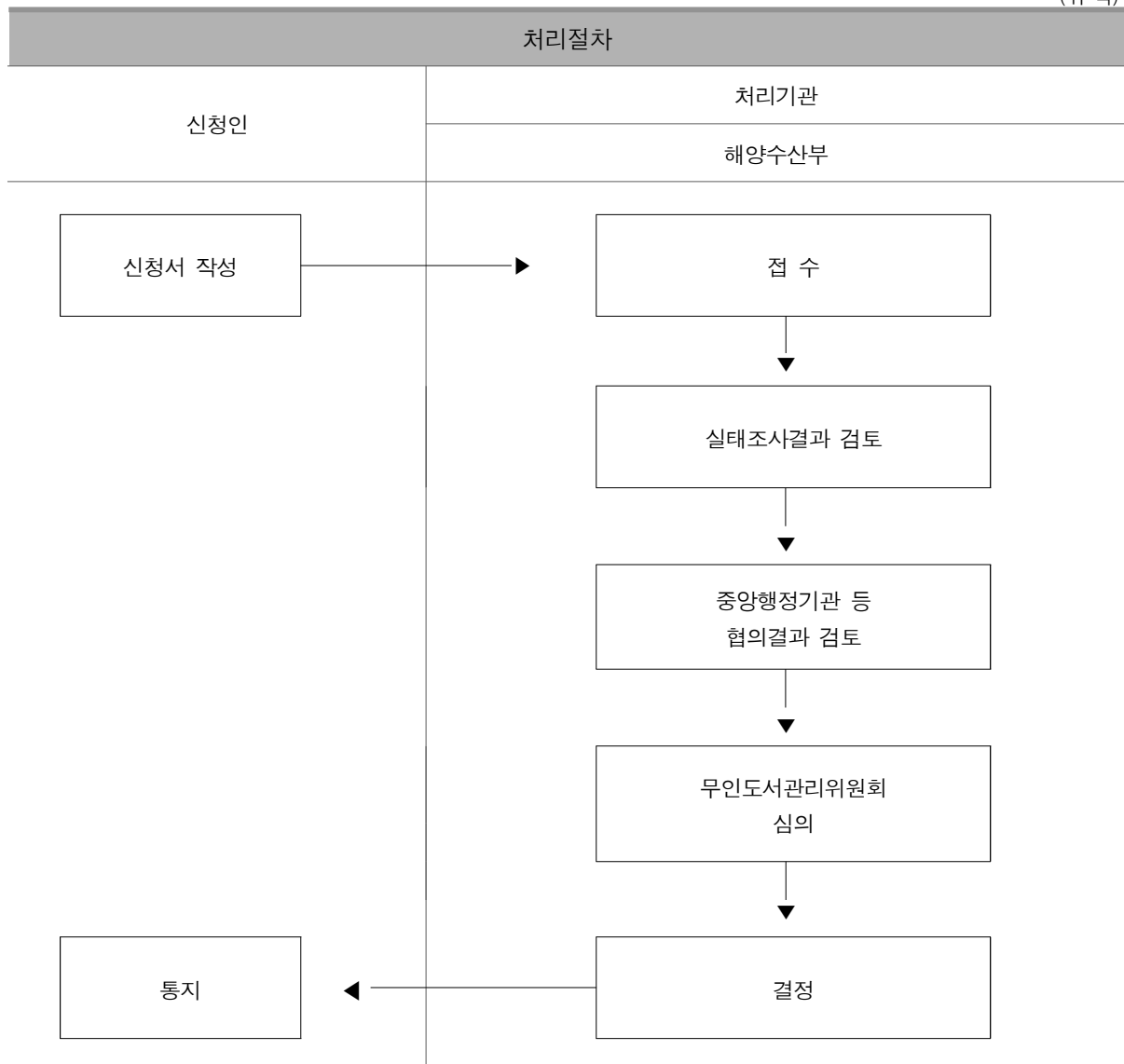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

이의신청서

(앞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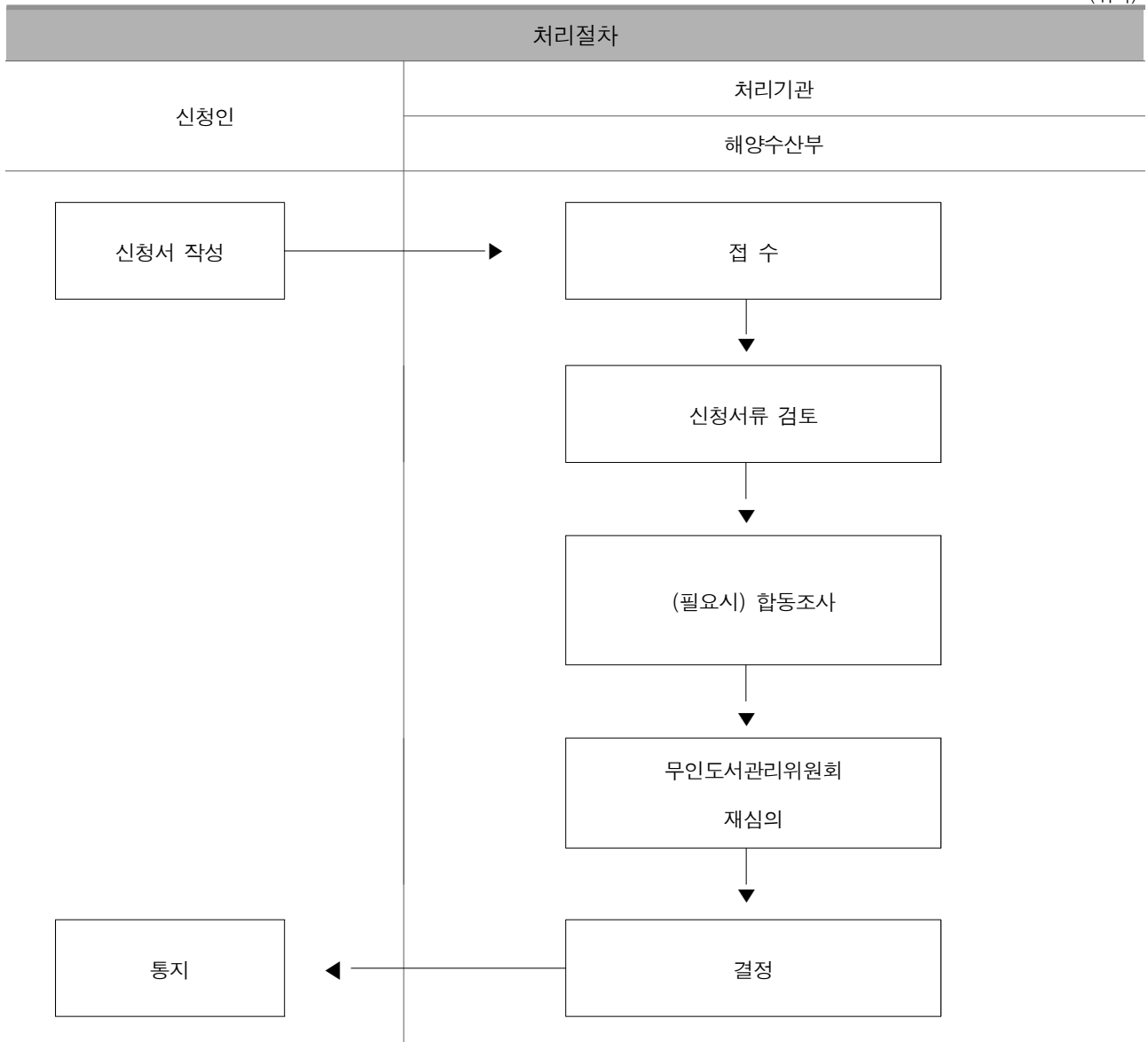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	일련번호	처리기간	3개월			
신청인	성명(한글)						
	생년월일					전화번호	
	주소						
도서명							
토지의 표시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권리의 종류	비 고
	1						
	2						
	3						
관리유형 지정내용							
이의신청 내용							
이의신청 사유				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상부장관 귀하



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	(앞쪽) 1일
신 청 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자메일		
		(전화번호 :)		
대상도서	명칭			
	소재지			
출입목적				
출입기간				
출입지역				
출입자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	직업	기타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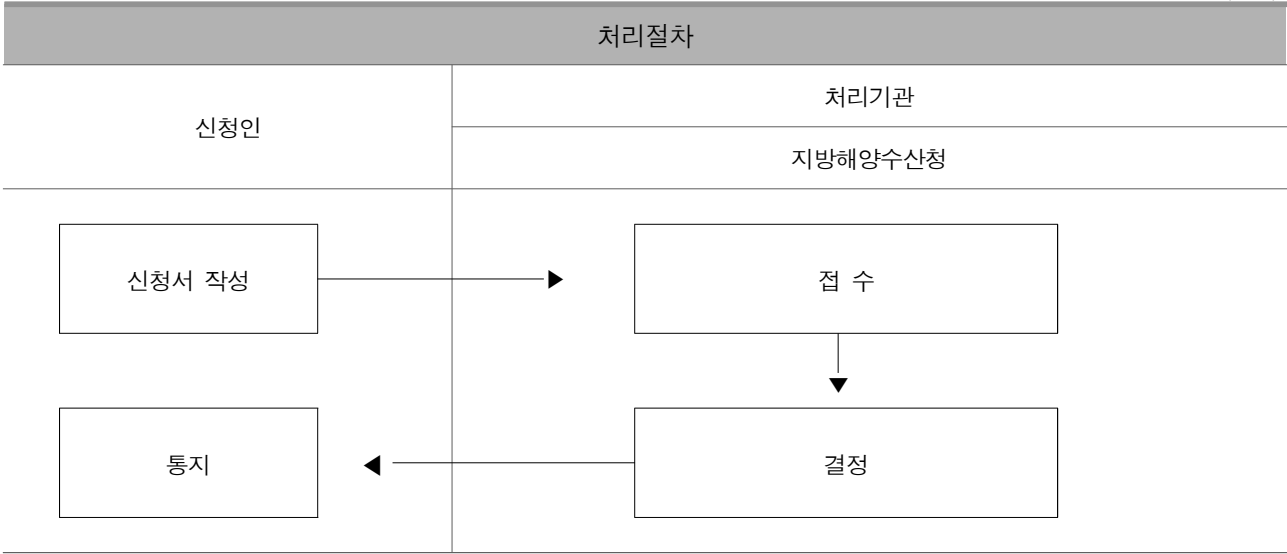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

제 호

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

성 명					
주 소					
출입목적					
출입할 무인도서의 명칭 및 구역					
출입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출 입 자 인적 사항	성명	생년월일	주소	전화번호	직업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

직인

[] 준보전무인도서 [] 이용가능무인도서 시설물 설치 (변경)허가 신청서(안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
	신청인 구분 [] 소유자 [] 관리자 [] 점용자 [] 사용자		

허가 사항

무인도서명(지번)	
설치시설물 종류	[] 공공시설물 [] 휴양 및 편의시설 [] 주택 [] 가축사육시설 [] 보관창고 [] 기타
개발 목적	[] 신축 [] 보수 [] 증축 [] 개축

허가 내용	공공시설물	시설물 용도		설치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휴양 및 편의시설	시설물 용도		설치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주택	세대 수		연면적(㎡)	
				건축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가축사육시설	사육 가축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보관 창고	보관 용도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기타	용도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변경 사유 (변경허가 신청시에만 작성)	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,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첨부서류

1. 사업계획서
2. 위치도
3. 구적도(求積圖) 및 설계도서
4.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(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5. 환경영향평가서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한다)
6.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

처 리 절 차

신청인

처리기관

해양수산부

신청서(신고서) 작성

접 수

검 토

허가증 또는 신고
증명서 발급

결재

[] 준보전무인도서 시설물 설치 (변경)허가서
[] 이용가능무인도서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
	신청인 구분 [] 소유자 [] 관리자 [] 점용자 [] 사용자	

허가 사항

무인도서명 (지번)	
설치시설물 종류	[] 공공시설물 [] 휴양 및 편의시설 [] 주택 [] 가축사육시설 [] 보관창고 [] 기타
개발 목적	[] 신축 [] 보수 [] 증축 [] 개축

허가 내용	공공시설물	시설물 용도		설치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휴양 및 편의시설	시설물 용도		설치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주택	세대 수		연면적(㎡)	
				건축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가축사육시설	사육 가축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보관 창고	보관 용도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기타	용도		설치 면적(㎡)	
		공사 기간		기타 사항	
	변경 사유 (변경허가 신청시에만 작성)	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,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

직인

[] 준보전무인도서
[] 이용가능무인도서 시설물 설치 준공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성 명		
	주 소 (전화번호:)		
사업개요	도서명	공사의 종류	
	공사장소	공사규모	
	공사목적	총공사비	
	공사기간		
	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시설 내용		
	기타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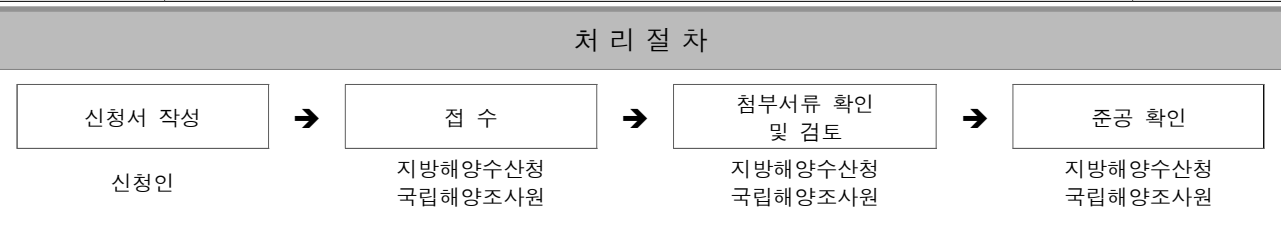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준공 조서(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) 2. 지적측량 성과도 3.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시설물 설치준공 확인증명서

시행자	성 명
	주 소 (전화번호:)
준공 검사 항목	도서명(위치)
	관리유형
	공사의 종류
	공사 장소
	공사 목적
	공사기간(준공연월일)
	준공시설(국가 및 지자체 귀속 여부)

귀하가 시행한 무인도서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, 제12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

직인

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

연 번	도서명	관리 유형	위치	목적	허가·협의· 승인연월일	협의·승인받은 자		협의·승인 기간	인가신고 연월일	시설설명	비고
					면적(㎡)	성명	전화번호		준공 연월일		
1								~			
2								~			
3								~			
4								~			
5								~			
6								~			
7								~			

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
				(앞쪽) 2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
도서 정보	도서명		지목	
	위치(지번)			
신청 내용	개발사업 명칭			
	개발사업 내용			
	개발사업 규모			
	총사업비			
	개발사업 목적			
	사업기간 (착공) 년 월 일 ~ (준공) 년 월 일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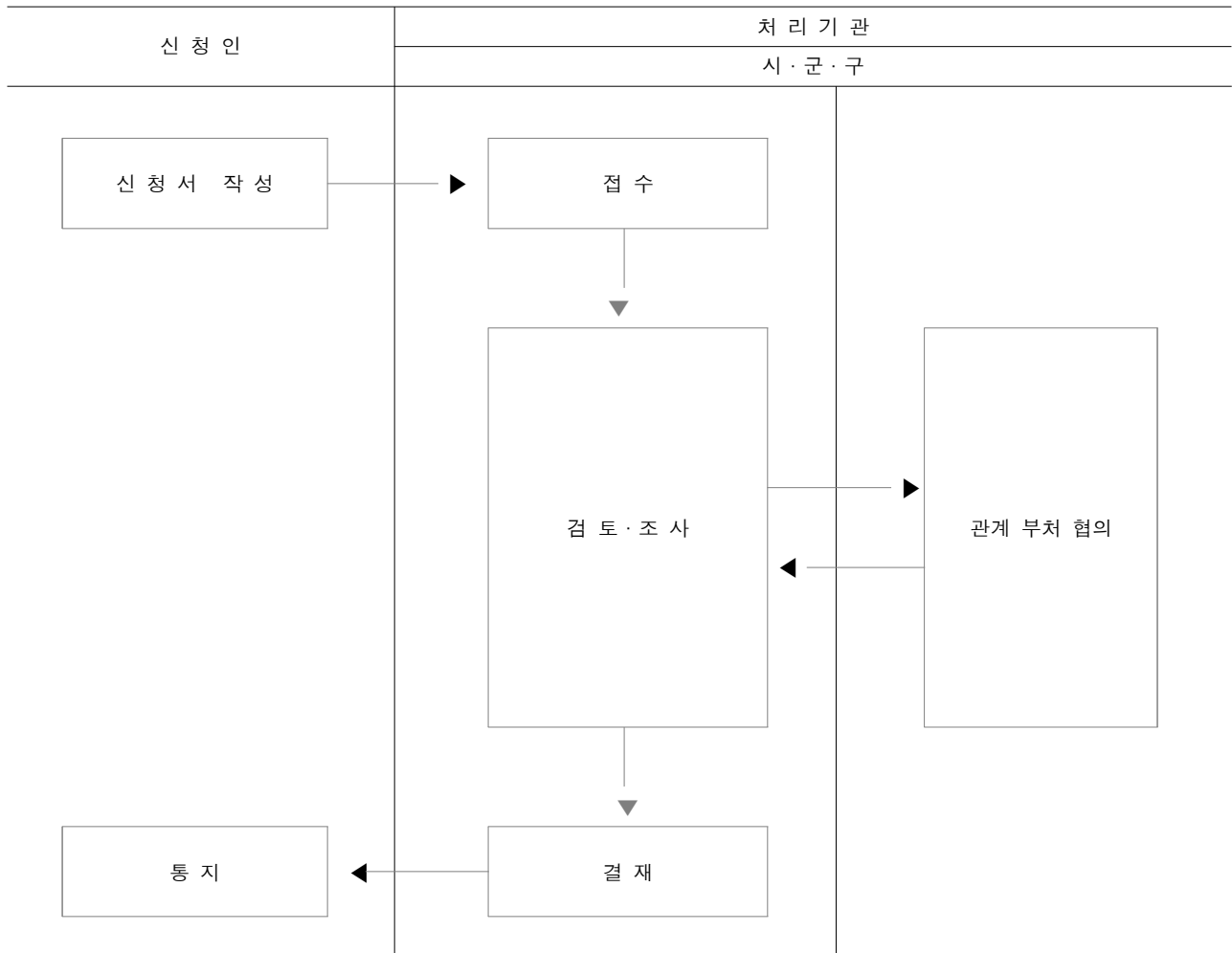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개발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. 구적도(求積圖) 및 설계도서 4.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(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5. 환경영향평가서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6.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※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서 연서·날인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지방해양수산청장·시·도지사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지적도 및 임야도 ※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지적도 및 임야도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합니다.	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개발사업계획 승인서

승인번호	
신청인	성 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
관련 사항	사업시행지의 위치
	사업 목적
	사업의 면적(규모) 및 내용 사업면적 : m ² 사업내용 :
	사업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 (착공예정일: , 준공예정일:)
	승인조건 (붙임과 같음)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.

 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
				(앞쪽) 10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
연락가능인	성명		전화번호	
관련 사항	사업승인일			
	사업위치			
	사업면적 m ²		사업목적	
	총공사비			
	사업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사업계획 변경개요			
	변경사유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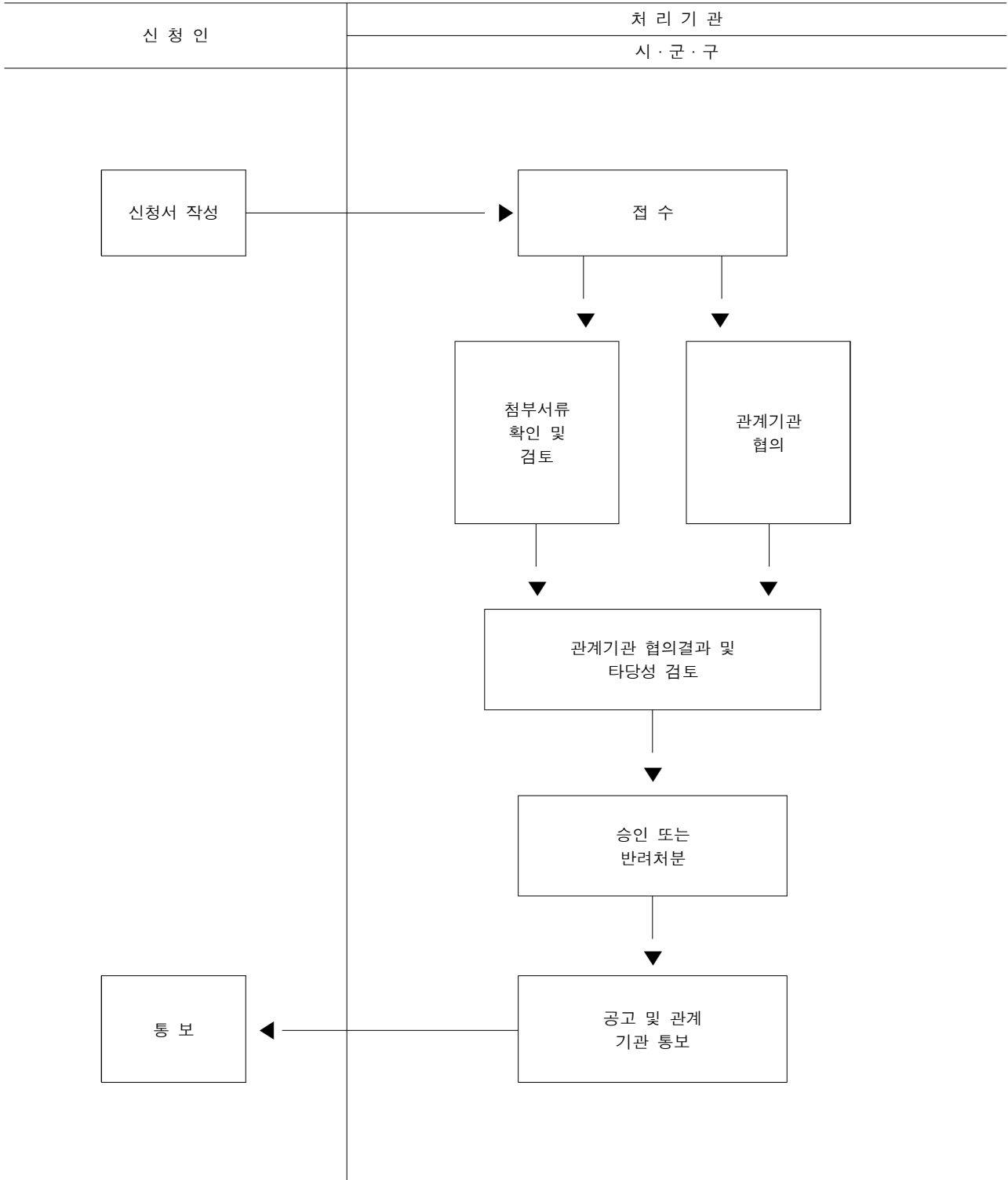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.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. 변경된 설계도서 4. 변경된 예정공정표 5. 권리자의 동의서(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※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.	없음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

승인번호		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 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	사업내용	사업내용
	사업기간	사업기간
	승인조건	승인조건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개발사업 준공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 명	
	주 소 (전화번호:)	
사업개요	도서명	공사의 종류
	공사장소	공사규모
	공사목적	총공사비
	공사기간	
	국가 및 지자체 귀속시설 내용	
	기타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준공 조서(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) 2. 지적측량 성과도 3.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시장·군수·구청장	→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시장·군수·구청장	→	준공 확인 지방해양수산청 시장·군수·구청장

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

시행자	성 명
	주 소 (전화번호:)
준공 검사 항목	도서명(위치)
	공사의 종류
	공사 장소
	공사 목적
	공사기간(준공연월일)
	준공시설(국가 및 지자체 귀속 여부)

귀하가 시행한 무인도서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무인도서 관리대장

연 번	도서명	위치	목적	허가·협의·승인연월일	협의·승인받은 자		협의·승인 기간	인가신고연월일	주요시설	비고
				면적(㎡)	성명	전화번호		준공연월일		
1							~			
2							~			
3							~			
4							~			
5							~			
6							~			
7							~			

영해기점(영해기준점) 무인도서 관리대장

(3쪽 중 1쪽)

도서명	영해기점(영해기준점)	
	구분	위치

무인도서 현황

소재지

지번	지목	지적(㎡)	소유자	특기사항

시설물 현황

순번	시설명	부지면적(㎡)	시설개요	건축물			처분근거 및 연월일	기록일
				동수	면적	용도 및 능력		기록자

(뒤쪽 계속)

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이용현황					
설치시설	설치목적	설치장소	설치일자	설치자	비고

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 형상	
무인도서	영해기준점 표지
정면사진(촬영일자)	영해기준점 표지 위치도(좌표)
측면사진(촬영일자)	영해기준점 표지 사진(촬영일자)

(뒤쪽 계속)

점검 현황

[illegible]

무인도서 점검대장

[illegible]

(앞쪽)

토지출입증		
사진 (2.5cm × 3cm)	① 소속	
	② 생년월일	
	③ 성명	
위 사람은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		

60mm×90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④ 출입 목적			
⑤ 출입 지역			
⑥ 유효 기간	년 월 일	일부터	
	년 월 일	일까지	
비고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60mm×90mm[백상지(150g/㎡)]

토지매수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5년				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				
	주소(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			
토지에 관한 사항	번호	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 (㎡)	용 도 지 구	이 용 현 황
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번호	종 류	지상권·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				
			설정 기간	잔존 기간	담보 (한도)액	연간 지대(원)	권리자
매수청구 사유							

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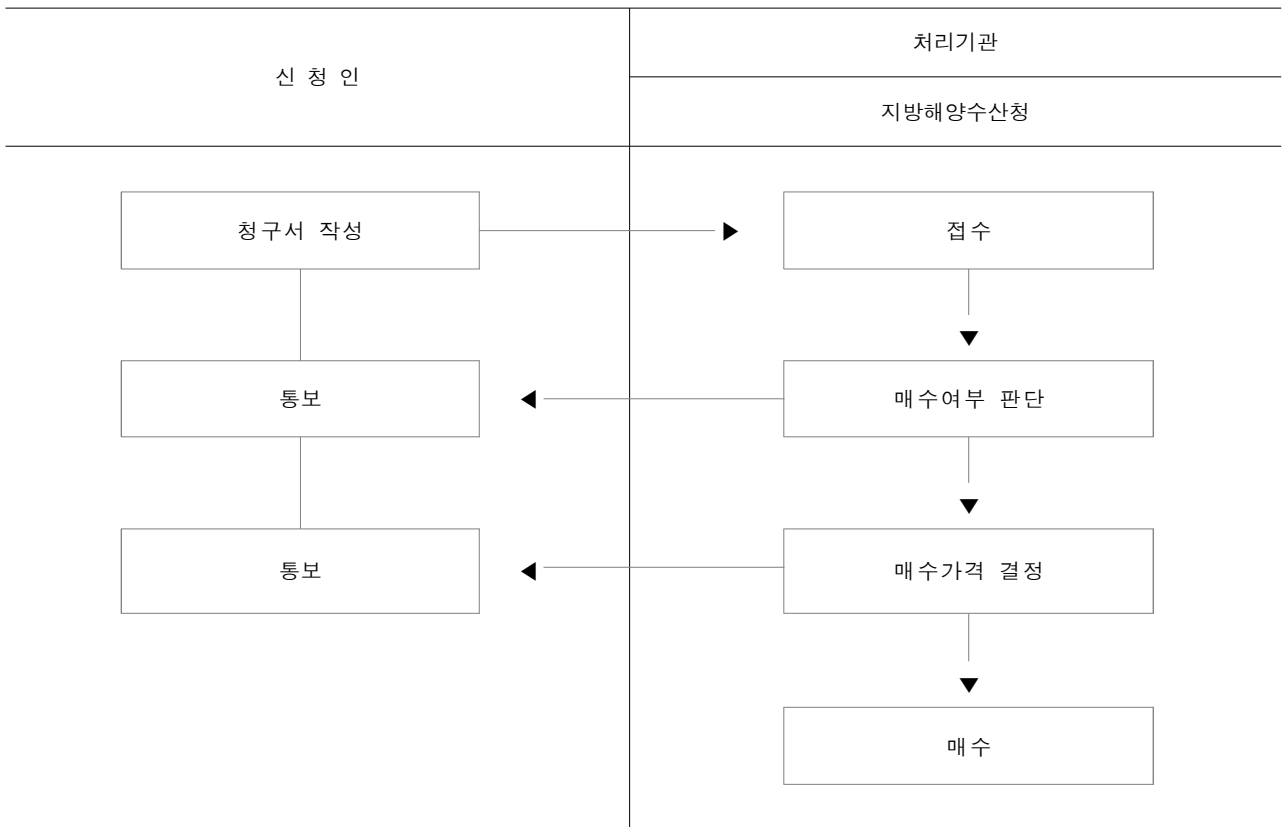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등기부 등본,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.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(앞쪽)

제	호
무인도서 조사원증	
사 진	
3.5cm×4.5cm	
성 명	
지방해양수산청	

60mm×90mm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(발급번호)	
소	속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성	명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생	년 월 일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직	위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조	사 지 역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조	사 분 야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유	효 기 간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위 사람은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무인도서 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지방해양수산청장	직인

(앞쪽)

제 호
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
사 진 3cm × 4cm
성 명
지방해양수산청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60mm × 90mm[백상지 150g/㎡]

(뒤쪽)

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
성명: 생년월일: 주소:
위 사람은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무인도서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나. 무인도서의 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다. 무인도서의 보전·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건의 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권리·의무승계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(앞쪽) 즉시
신고인	①상호(명칭)		②사업자등록번호		
	③성명(대표자)		④생년월일		
	⑤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 :)				
승계 내역	⑥상호(명칭)		⑦사업자등록번호		
	⑧성명(대표자)		⑨생년월일		
	⑩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 :)				
	승계대상	구분	개발사업계획		
		⑪사업내용			
		⑫승인일자			
⑬승인번호					
승계사유					

「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원본 2. 양도·양수,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4. 그 밖의 해당 사유별로 권리·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.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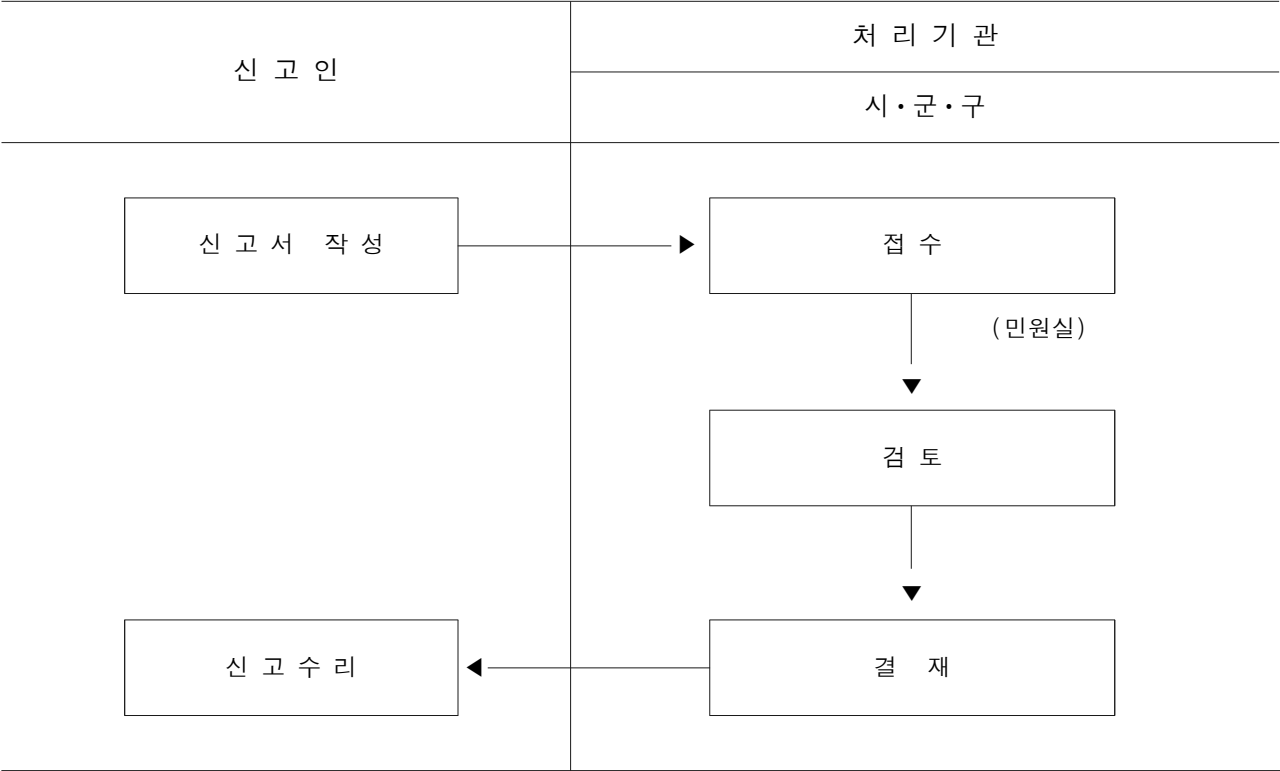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

(기관명)

년 월 일

■ 문서번호:

■ 전화번호:

■ 수신:

■ 발신: 시장·군수·구청장

인

1. 도서현황

읍·면·동	도서 수			면적(천㎡)			인구 (명)	세대수
	계	유인도	무인도	계	유인도	무인도		
총계								

※ 연륙도서는 제외

2. 유인도서 현황

○ 증감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	해당 연도 말 현황		
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
계									
증가	-	-	-				-	-	-
감소	-	-	-				-	-	-

※ 상시거주인구로 구분

○ 증감사유

3. 무인도서 현황 및 증감사유

○ 증감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
계						
증가						
감소						

○ 증감사유

4. 미등록 무인도서의 발견 및 신규등록 현황

○ 신규발견현황

○ 신규등록 현황

5.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보호구역 설정 현황

보호구역명칭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

○ 보호구역의 증감 내용 및 사유

6. 무인도서내 시설물 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
시설물 설치 추진 중						
신규 시설물 설치	-	-			-	-
시설물 설치 완료	-	-			-	-

○ 해당 연도 시설물 설치 신규 현황

도서명	시설물 명칭	목적	설치자	설치 허가일	설치 완료일

7. 무인도서 개발사업 추진 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
개발사업 추진 중						
개발사업 신규착공	-	-			-	-
개발사업 완료	-	-			-	-

○ 해당 연도 개발사업계획 신규승인 현황

도서명	사업의 명칭	사업의 목적	사업시행자	사업계획승인일	준공예정일

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

(기관명)

년 월 일

■ 문서번호:

■ 전화번호:

■ 수신: 해양수산부장관

■ 발신: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☐ 인

1. 도서현황

읍·면·동	도서 수			면적(천 m ²)			인구 (명)	세대수
	계	유인도	무인도	계	유인도	무인도		
총계								

※ 연륙도서는 제외

2. 유인도서 현황

○ 증감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	해당 연도 말 현황		
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	소계	10명 이상	10명 미만
계									
증가	-	-	-				-	-	-
감소	-	-	-				-	-	-

3. 무인도서 현황 및 증감사유

○ 증감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수량	면적(m ²)	수량	면적(m ²)	수량	면적(m ²)
계						
증가						
감소						

○ 증감사유

4. 미등록 무인도서의 발견 및 신규등록 현황

○ 신규발견현황

○ 신규등록 현황

5.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보호구역 설정 현황

보호구역명칭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	수량	면적(㎡)

6. 무인도서내 시설물 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
시설물 설치 추진 중						
신규 시설물 설치	-	-			-	-
시설물 설치 완료	-	-			-	-

○ 해당 연도 시설물 설치 신규 현황

도서명	시설물 명칭	목적	설치자	설치 허가일	설치 완료일

7. 무인도서 개발사업 추진 현황

	전년도 말까지 현황		해당 연도 증감현황		해당 연도 말 현황	
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	건수	면적(㎡)
개발사업 추진 중						
개발사업 신규착공	-	-			-	-
개발사업 완료	-	-			-	-

○ 해당 연도 개발사업계획 신규승인 현황

도서명	사업의 명칭	사업의 목적	사업시행자	사업계획승인일	준공예정일

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0조(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 행위)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말한다.		제10조(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 행위) ①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-----		
1. ~ 7. (생 략)		-----.		
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용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	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	<삭 제>		
		제10조의2(시설물 설치 허가 등)		
		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(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		
		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(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		

제16조(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	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고, 관련 사항을 허가청의 누리집 및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④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. ⑤ 영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.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허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실을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제16조(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) ① ----- 영해기점무인도서
---	--

선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(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)에 영해기점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해기점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점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점표의 형상, 재질 및 규격 등은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다. 다만,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(생략)

제17조(무인도서의 점검)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(이하 “무인도서 점검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

및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(이하 “영해기준점 표지”라 한다)가 설치된 도서----- 영해기준점 표지가 -----
훼손된 ----- 영해기준점 표지를 -----.

② ----- 영해기준점 표지의 -----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-----
-.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무인도서의 점검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

<u>역의 오염에 관한 사항</u> 3. · 4. (생 략) 5. 무인도서의 <u>개발사업</u> 시행현 황 6. · 7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제19조(토지 매수절차 등) ① 지 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 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<u>감정평가업자</u>에 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 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 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제24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 <u>27조제4항</u>에 따른 과태료의 징 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 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 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.	<u>훼손 및 오염(쓰레기 등)----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시설물 설치 및 개 발사업</u> ----- -- 6. ·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9조(토지 매수절차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 <u>27조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---	--